

건설공사 대장관리

건설공사대장 관리

- 건설공사대장신규작성
- 건설공사대장 조회 및 변경
- 포괄대금지급보증
- 공동도급(참여)공사 조회
- 이관된 건설공사 조회
- 준공된 건설공사 조회
- 행정처분내역(하수급인)
- 자사공사통계
- 자사공사세부검색
- 불법행위 자가진단

건설공사 행정업무관리

- 직접시공계획서 목록
- 하도급계약통보서 목록
- 하도급심사자가평가표 목록
- 재하도급승낙통보서 목록
-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목록
-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
- 타워크레인대여계약통보서

기성실적증명서 관리

- 기성실적증명서 작성
- 기성실적증명서 신청목록



HELP DESK

TEL. 1588-8456

FAX. 070-4850-8531

CWS 건설공사정보시스템 - 사용자의 Microsoft Edge - Microsoft Edge

https://cws.kiscon.net/research/CWI_RESEARCH20260820_WON.aspx

하도급계약 적정성 심사 제도 개선 의견조사(원도급업체用)

3월동안 보이지 않기



최근 국토교통부는 하도급계약 적정성 심사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한국건설기술연구원과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은 「하도급계약 적정성 심사 제도 개선 의견조사」를 통해 적정 하도급률(현재 82%)과 제도의 운영(하수급인 변경, 심사항목, 예외 사유 등) 실태를 파악하여 제도 개선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바쁘시겠지만, 적극적인 설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응답자 정보

업체 정보	☐ 종합건설업 ☐ 종합건설업 + 전문건설업 주된 업종 : ☐ 토목공사업 ☐ 건축공사업 ☐ 토목건축공사업 ☐ 산업·환경설비공사업 ☐ 조경공사업
시공 분야	☐ 공공공사 위주 ☐ 민간공사 위주 ☐ 공공과 민간공사 병행 * 주 사업 영역인 부분에 표기(병행인 경우 각각의 비중이 40~60%인 경우)
기업 규모	시공능력평가 순위 ☐ 1~30위 ☐ 31~100위 ☐ 101~500위 ☐ 501위~

1. 하도급률 82% 기준 인식 실태

1-1. 하도급계약 적정성 심사의 기준인 '하도급률 82%'라는 기준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 적절한 기준이다
☐ 부적정한 기준이다

1-2. 위 질문에서 '② 부적정한 기준이다'라고 응답하신 경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최대 2개 선택)

- ☐ 현행 기준으로는 적정 공사비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 공종 및 사업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에
☐ 일률적 기준으로 인해 형식적인 기준 충족 또는 심사 회피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